

과천도시공사 「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「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」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 안전관리, 범죄예방 등 다목적 용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9월 11일

과천도시공사 사장

1. 설치목적

- 공영주차장 내 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
- 공영주차장 내 발생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

2. 관련근거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-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3. 설치내용

-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

주 소	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50-8					
설 치 위 치	지하 3층 ~ 지상 1층(공영주차장 내)					
설 치 대 수	설치장소	CCTV			합 계	
		보안용 카메라	열화상 카메라	주차관제 카메라		
	지상 1층	14	6	4		24
	지하 1층	12	-	30		42
	지하 2층	12	-	24		36
	지하 3층	12	-	24		36
합 계	50	6	82	138대		
촬 영 시 간	24시간					
영상정보저장기간	1개월					

4. 공고방법

- 과천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(<https://www.gcuc.or.kr>)

5. 행정예고(공고) 의견제출 기간

- 2025.09.11. ~ 2025.10.01.(21일간)

6. 의견제출

-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연락처 등
- 의견 제출처: 과천시도시공사 사업개발처
- 의견 제출 방법: 우편 또는 팩스
 - 우편: 경기도 과천시 새솔막길 39 KT 과천스마트타워 6층
 - 팩스: 02)500-1462
 - 의견 제출서 양식 및 위치도: 붙임 참조
-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과천시도시공사 사업개발처(02-500-1232)

※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